별첨 6

자가격리 통지서

자가격리 통지서		
성명		생년월일
자가격리	자가격리 기간	
	자가격리 장소	[] 자택 등 거주지 [] 그 외 시설
		주소

귀하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1조제3항제2조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지합니다.

※ 본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2015년 월 일

성북구청장

(관인생략)